

보도시점 (전매체) 8.26.(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해당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례) 2024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1일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이후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종료.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유예가 1

년차 이후 조기에 중단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제도과	책임자	과 장	오보연 (044-204-7451)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044-204-7576)
			주무관	안서연 (044-204-7454)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별표3]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